

검토보고서

2022. 11. 30.(수)

| 검 토 안 건 | 발 의 |
|---|-----|
|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마포구 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 | 의 원 |



복지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김동원)

검 토 보 고 서

(전문위원 김동원)

1. 안 건 명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 운영등에관한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

2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-146호
- 나. 제 출 자 : 장정희 의원외 9명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24.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회의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」 등 8개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아동복지법 등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1조)
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2조)
- 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3조)
- 라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4조)

- 마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5조)
- 바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6조)
- 사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7조)
- 아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」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8조)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2) 「아동복지법」
- 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나. 예산조치

- 1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나. 기타사항

- 1) 일괄개정조례안 : 붙임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3) 입법예고 : 2022. 11. 18. ~ 11. 23.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2022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20건, 규칙 2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비된 8건의 자치법규를 추가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일괄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 제1조에서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의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”로

제2조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6조”를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”로 제8조제2항 중 “아동청년과장”을 “담당 부서장”으로, “아동돌봄팀장”을 “담당 팀장”으로 하며.

- 안 제2조에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와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와 제161조”로 하며

- 안 제3조에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의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1항”으로 하며

- 안 제4조에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하며

- 안 제5조에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”로 하며

- 안 제6조에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”로 하며

- 안 제7조에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제29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”으로 하며

- 안 제8조에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」의 제2조제2항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1항”으로 총 8개의 자치법규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.

○ 종합의견

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아동복지법」 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으로 법령 정비기준 및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·반영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추후 타 관련 조례도 면밀히 살피어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 개정예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.

7. 기타자료

가. 비용추계서

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: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: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신은정 |
| 연 락 처 | 02-3153-8962 |

나. 관련 법규

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~ 생략 ~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「아동복지법」

제14조(아동위원) ① 시·군·구에 아동위원을 둔다.

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 (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6조”를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아동청년과장”을 “담당 부서장”으로, “아동돌봄팀장”을 “담당 팀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와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와 제161조”로 한다.

제3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
제5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”로 한다.

제6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7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「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<u>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</u> 규정의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) 협의회는 <u>아동복지법 제6조</u> 규정의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, 각동의 아동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.</p> | 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) ----- <u>아</u> <u>동복지법 제1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8조(간사) ① (생략) ②협의회의 간사는 <u>아동청년과장</u> 이 되고 서기는 <u>아동돌봄팀장</u> 이 된다.</p> | <p>제8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담당 부서장</u>----- ----- <u>담당 팀장</u>----- -----.</p> |
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와 제144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 --제13조와 제16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|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1항----- ----- -----. |

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|

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복잡하고 대 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, 건설공사의 설계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 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 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 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을 설치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 치법」 제13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34조 및 「지방자치 법」 제9조에 따라 일반주민과 경 제적 자립 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 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 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지방자치 법」 제1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29조(위탁관리) ① 구청장은 시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· 관리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가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p>②·③ (생략)</p> | <p>제29조(위탁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|

8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」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2조(공인의 종류) ① (생략)</p> <p>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·2. (생략)</p> <p>3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.</p> <p>4. (생략)</p> | <p>제2조(공인의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|